



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N.C.Gen.Stat. §96-15(e) 에 의거하여, 이 사유는 항소 결정 번호 에 따른 **고용주의 항소**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 위원회 ("Board")에 제출되었습니다. 일, 해당 케이스에 대한 증거 청문회가 항소 심판 앞에 진행되었습니다. 기록 증거 및 적시에 제출된 모든 요약문 또는 서면 주장이 완전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고용안전법은 본부가 당사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N.C. Gen. Stat. §§ 96-15(c) 및 (f); 04 N.C. Admin. Code 24C .0209. 를 참조하십시오. 즉, 모든 당사자는 절차상 공정성 및 실질적인 정당한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은 당사자들에게 발언이 들어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사자들이 발언이 들어질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법 절차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법률 적용을 요구합니다. 원고가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 고용주는 원고의 해고가 원고를 실업보험 혜택에서 실격시키는 이유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할 부담이 있습니다. Guilford Cty. v. Holmes, 102 N.C. App. 103, 401 S.E.2d 135 (1991); Intercraft Indus. Corp. v. Morrison, 305 N.C. 373, 376, 289 S.E.2d 357, 359 (1982); Umstead v. Emp't Sec. Comm'n, 75 N.C.App. 538, 331 S.E.2d 218, cert. denied, 314 N.C. 67, 336 S.E.2d 405 (1985). 고용주에 따르면, 원고는 의이 이유로 업무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원고의 고용에서 퇴직이유를 뒷받침하는 전자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청문회에 대한 항소 심판과 원고에게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부는 고용주에게 그의 청문회에서 모든 증언, 녹취록, 서류, 및 기타 증거를 제시할 의무에 대해 통지하였습니다. **항소 & 청문회: 레벨 1 - 초기 결정에 대한 항소**라는 제목의 파란색 팜플렛이 일, 판결 서류 번호 의 사본과 함께 각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팜플렛의 5 번 및 6 번 패널은 다음 언어를 포함합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문회 통지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청문회 통지서와 함께 제공된 모든 문서를 읽고 케이스에 대해 어떠한 말들이 적혀있는지 알고 계십시오. 이것은 귀하가 어떤 증인이 청문



회에서 증언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 기록, 및 기타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청문회가 전화로 개최되는 경우, 귀하는

고위당국 결정 번호  
5 페이지 중 2

청문회 일주일 전에는 항소심판 및 각 당사자에게 귀하의 증거 사본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접 참석하는 청문회의 경우, 각 당사자 및 항소심판들에게 충분한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귀하가 다른 당사자 및 항소심판에게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항소심판은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귀하의 증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목격자를 선택하고 그들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목격 증언과 직접 증언은 항상 최선의 증거입니다. 직접 증언은 그들이 스스로가 언급된 것 또는 행해진 것에 대해 냄새를 맡고, 느끼고, 보았거나, 들은 증언들을 포함합니다. 만일 혐의된 행위에 대한 녹취록이 있는 경우, 그 녹취록은 증거로 제공되지 않은 녹취록에 대해 보았거나 들었다고 하는 증인의 증언보다 최선의 증거가 됩니다. 어떤 당사자가 해당 케이스와 관련 있다고 귀하가 생각하는 문서에서 명했거나 서면으로 무언가를 제출했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해당 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귀하는 항소심판 및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화 청문회의 경우 항소심판에게 연락하거나 귀하의 청문회 통지와 함께 제공된 전화 청문회 질문지를 작성하여 귀하의 증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십시오. 04 N.C. Admin. Code 24C .0209를 참조하십시오.

.일에 청문회 공지 별지 번호가 모든 당사자들에게 우편 발송되었습니다. 다른 것들과 함께,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 맹세한 증언이 요구됩니다. 귀하가 증인들이 증언하길 원한다면, 그들은 청문회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귀하가 청문회 담당자가 고려하기를 원하는 문서, 전자 녹취록, 또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담당자 및 각 당사자에게 우편 발송 또는 전달해야 합니다. 증거는 청문회 이전에 수령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통지서는 또한 당사자들에게 청문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당한 원인을 제시한다면, 청문회에 앞서 고용주는 증거를 확보 및/또는 제출할 시간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실사를 실시할 때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법적 변명이 되는 법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A .0105(26)를 참조하십시오. "실사"란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행하도록 기대되고 행해지는 조심성, 예방, 주의, 그리고 올바른 판단의 척도를 의미합니다. 04 N.C. Admin. Code 24A .0105(21).

앞서 언급된 서면 통지에 따르면 고용주는 모든 증언 및 기타 증거 제시를 위해 증거 청문회에 참석할 의무에 대해 알려졌음이 분명합니다. 이 기록에는 04 N.C. Admin. Code 24C .0201에 정의되었듯 고용주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게끔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기록에는 04 N.C. Admin. Code 24C .0207에 의거하여 고용주가 증언 또는 문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청문회의 재조정을 요청하지 못하게끔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 역시 없습니다. 기록 상에 중요한 사안에 관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원고가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고용주에게 한 번 이상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원고의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하고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실업급여 혜택에 자격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반복해서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Dunlap v. Clarke Checks, Inc., 92 N.C. App. 581, 375 S.E.2d 171 (1989). 따라서, 위원회는 고용주가 절차적 정당한 절차를 부여받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위원회는 단순히 고용주가 증언이나 기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지 않았거나 04 N.C.



24A .0105(26)에 정의된 청문회를 재조정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  
제를 재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고위당국 결정번호  
5 페이지 중 3

실사를 실시할 때에 법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법적 변명이 되는 법적  
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Douglas v. J.C. Penney Co., 67 N.C. App. 344, 313 S.E.2d  
176 (1984) 또한 참조하십시오. Patrick v. Cone Mills Corp., 64 N.C. App. 722, 308 S.E.2d 476  
(1983). 이 경우, 위원회는 제시된 증거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Patrick v. Cone Mills  
Corp., 64 N.C. App. 722, 308 S.E.2d 476 (1983)를 참조하십시오.

고용주는, 원고가 실업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전자 녹취록에  
대한 증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증거의 적합성을 보이는 일건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을 져야 합  
니다. 고용주의 증인(들)은 녹취록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증거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고  
용주가 의존한 증인(들)의 녹취록 내용에 대한 증언은 녹취록의 내용 또는 원고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증거"가 아니었으며, 적합한 증거가 아닌 한 사실의 발견을 뒷받침하는데 사용  
될 수 없었습니다. N.C. Gen. Stat. § 96-15(i).

노스캐롤라이나 증거 고도의 목적상, "글" 및 "녹음"은 글자, 단어, 소리 또는 숫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것으로서 필기, 타이핑, 인쇄, 사진 사본, 사진, 자기 임펄스, 기계적 또는 전자 녹  
취록, 또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 편집을 포함합니다.  
"사진"에는 스틸 사진, 엑스레이 필름, 비디오 테이프, 및 모션 사진이 포함됩니다.  
"최선의 증거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N.C. Gen. Stat. § 8C-1, Rules 1001. N.C. Gen. Stat. § 8C-  
1, Rules 1002 and 1003 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면, 녹음 또는 사진 원본 또는 복제본 제작을 요구합니다. 즉, 최선  
의 증거 규칙은 증거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녹음을 하거나 합리적으로 사용 또는 얻을 수 있거나 있  
었던 경우, 녹음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2 차적 증거를 제외하도록 요구합니다.  
원고가 녹음 내용이 고용주의 증인(들)이 증언한 것과 같았다고 증언한 경우 고용주는 녹음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N.C. Gen. Stat. § 8C-1, Rule 1007 을 참조하십시오.  
하지만, 원고는 고용주가 주장한 대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과 녹취록이 고용주의 입장과 같은  
사건을 보여주었을 것이라는 것 모두 거부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고용주가 입증하기 위해서  
녹취록 제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경우, 원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에 대한 최선의 증거는 증  
인(들)이(그가) (그녀가)  
(그들이) 녹취록에서 보았거나 들었다는 증언이 아닌 해당 녹취록 자체입니다.

실업 보험 혜택을 위한 분쟁 클레임을 포함한 케이스에 대한 궁극적 사실  
발견자로서 위원회는 고용주가 최선의 증거를 합리적으로 사용 또는 얻을 수 있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위원회는 또한 항소 심판이 발견된 사실에 고용 안전법 (N.C. Gen. Stat.  
§ 96-1 이하 참조)을 적절하고 올바르게 적용했으며 결과적 결정은 법과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원고가 위법 행위로 인해 해고되었다는  
것과 N.C. Gen. Stat. § 96-14.6 의 의미 내에서 혜택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담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항소 심판의 결정은 (확인되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부터 실업 보험 혜택에 대하여 실격입니다  
실격이 아니며 부터 실업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고위당국 결정번호  
5 페이지 중 4



평가 위원회 위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가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_\_\_\_\_  
위원장

**주의:** 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우편 발송 후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팜플렛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팜플렛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www.des.nc.gov](http://www.des.nc.gov) 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항소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의 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 캐롤라이나 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 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 ("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 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당국결정번호  
5 페이지중 5



**주의:** 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 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 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 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서에서, 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